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및 공급세대

■ 위 치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블록		
■ 공급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중 일반분양 426세대(기관추천 43세대)		
■ 시행/시공	시행 : (주)티글로벌 시공 : (주)티건설, (주)티종합건설, (주)시티	■ 공급 대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입주예정	2029년 03월(예정)	■ 분양 문의	1899-6851

■ 공급 내역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비고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등)	계약면적		확정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 영 주 택	059.9742A	59A	59.9742	18.5296	78.5038	47.5470	126.0508	21	2	10	
	059.7421B	59B	59.7421	18.5593	78.3014	47.3631	125.6645	87	8	40	
	084.8481A	84A	84.8481	24.3323	109.1804	67.2669	176.4473	86	9	45	
	084.9648B	84B	84.9648	24.1873	109.1521	67.3593	176.5114	21	2	10	
	084.9558C	84C	84.9558	24.2280	109.1838	67.3523	176.5361	105	12	60	
	084.9796D	84D	84.9796	24.5768	109.5564	67.3711	176.9275	21	2	10	
	084.9149E	84E	84.9149	25.3601	110.2750	67.3198	177.5948	85	8	40	
	합계							426	43	215	

※ 상기 공급내역은 현재 인·허가 진행 단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괄호() 안은 예비 대상자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 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배정 세대수(예비 500%)							합계
	59A	59B	84A	84B	84C	84D	84E	
국가유공자등	-	-	1(5)	-	1(5)	-	-	2(1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5)	-	1(5)	2(10)
장기복무제대군인	-	1(5)	-	-	1(5)	-	-	2(10)
중소기업근로자	-	1(5)	-	-	1(5)	-	1(5)	3(15)
철거민	1(5)	6(30)	7(35)	1(5)	7(35)	1(5)	6(30)	29(145)
장애인	경기도	1(5)	-	1(5)	-	-	1(5)	3(15)
	서울특별시	-	-	-	1(5)	-	-	1(5)
	인천광역시	-	-	-	-	1(5)	-	1(5)
합계	2(10)	8(40)	9(45)	2(10)	12(60)	2(10)	8(40)	43(215)

※ () 괄호안 숫자는 예비입주자 추천 세대이며, 500%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Ⅱ.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문	2026.09.18.(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건본주택 개관	2026.09.18.(금)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당사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원칙]	2026.09.29.(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발표	2026.10.12(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정당계약 체결	2026.10.22.(목) ~ 10.24(토)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건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서류 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본주택에서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 (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단위 : 만원) <table> <tr> <th>구분</th><th>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th>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td><td>250</td><td>200</td></tr>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구분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 상기 신청자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기본 사항만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유의 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처리 관련한 내용은 본 안내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예비대상자의 경우 경쟁 시 탈락할 수 있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 본인이 동일 청약통장으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동호수 추첨, 예비입주자 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분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건분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분양사무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대표번호 ☎ 1899-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안내문에 오타 및 오기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건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

■ 사업지 위치 안내

교통, 교육, 미래가치까지 서울옆세권을 완벽하게 누리는 착한 특권!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교통시설, 기타 주변개발계획 등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이는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 안내



사업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건 본 주 택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VI. 분양 문의

대표번호	1899-6851
홈페이지	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첨부1]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illegible]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도 동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배정 시)
- ※ 예비 대상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선정하며, 예비 대상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2026.09.16.(수) 13:00**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번호는 추천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